

## 북한 핵전략의 유형적 특징과 전망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

### 논문요약

본 논문은 북한 핵전략의 유형적 특징과 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핵전략의 개념과 유형, 북한의 핵능력과 선언적 핵전략, 북한 핵전략의 운용상의 특징과 전망을 살펴본 후 결론에서 우리의 대응을 도출해본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배치와 핵능력 증강은 우리의 안보와 군사적 대비태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핵전략이란 핵무기의 구성·배치·운용을 둘러싼 군사전략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핵무장이 실체화되었다는 매우 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우리 국방당국이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제공격, 미사일방어, 대량 응징보복 개념을 제시하고 그 도입과 전개를 서두르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한 조치이다. 표출된 북한의 선언적 핵전략은 ①‘핵보유국법’상의 핵억제·보복전략, ②핵선제공격론, ③제7차 당대회에 나타난 ‘핵선제 불사용원칙으로, 그리고 북한 핵전략의 저의 및 운용상의 특징은 ①기존핵 국가 관행모방을 통한 비난회피, ②선언적 핵전략을 통한 자신의 핵전략의 호도, ③핵전력과 핵태세간 격차로 인한 핵전략의 미정착 등으로 각각 요약해 볼 수 있다. 북한은 개정헌법(2012.7),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2013.3),’ 그리고 핵보유국법(2013.4) 등을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규정·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핵보유국(핵국가)’ 지위는 오로지 NPT만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닫힌 시스템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북핵위험을 억제·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핵의 억제는 물론 비핵화·무력화를 위한 우리의 단·중·장기적 인 정치·군사적 대응책의 수립·이행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북한의 핵전략, 핵능력, 핵선제공격, 한미동맹, 북한의 비핵화

## I. 서론

최근 한반도 정세는 북한체제의 불확실성 지속,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 남북관계 교착과 신뢰 미형성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정세는, 높은 경제협력에 비해 정치협력이 낮은 아시아 패러독스(Asian Paradox)현상 심화, 지역의 영향력 확대와 군비경쟁, 미중관계의 동북아 안보질서 핵심변수로의 등장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국가안보실2014, 27-34). 이에 더해 북한 핵무장 가시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핵무기 위협수준은 2016년 이후 부쩍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들어 2회 핵실험, 24회 미사일 발사시험을 실시했다. 북한이 제1차 핵실험(2006)을 실시한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김정일-김정은 주도로 핵과 미사일능력증강에 국력을 집중해온 점을 감안할 때 현재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평소 북한의 공격적·모험적인 행태와 무기배치의 관행을 볼 때, 작동에 대한 완벽한 검증 없이도 핵무기의 배치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국방당국이 북핵 대응책으로 선제 공격,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제시하고 그 도입·전개를 서두르는 것도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전봉근 2016a 144-145).

북한은 2006년 10월 최초의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2009년 5월과 2013년 2월에 제2차, 제3차 핵실험에 이어 제4차 핵실험을 2016년 1월 6일 새해 벽두부터 실시하여 ‘제4차 핵실험’이 아니라 ‘제1차 수소탄 실험’이라고 표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추가적 핵실험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어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핵탄두를 표준화·규격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 해인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ICBM에 탑재하기 위한 수폭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최태범 2017). 북한의 핵실험에 이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제1718호, 제1874호, 제2094호, 제2270호, 제2321호, 제2375호)도 뒤

따랐다(대한민국 국방부 2016, 240; 백용진 2017, 1-2).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6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능력확대를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로 핵무기 운반체계인 미사일 탑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017년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고 밝힌 지 약 7개월 만인 2017년 7월 4일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홍국기 2017). 이 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적일 경우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핵물질 보유량 확대와 소형화, 그리고 무수단 시험발사(2016.6.22)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2016.8.24.) 등 투발수단의 다변화(다종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36년만에 개최한 제7차 당대회(2016.5.6)에서 김정은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했고, 김정은은 사업총화보고에서 스스로 핵보유국으로 규정하여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을 항구적 전략노선”이라고 선언한 바도 있다(조한범 2016; 김법현 외 2016, 130).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1945.8.6; 1945.8.9)된 이래 핵무기의 사용은 없었지만 전쟁은 계속 발생했으며, 그 사용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국제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신화 위키』 “핵전략” 참조). ‘핵전략(nuclear strategy)’은 한 국가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위해 핵무기를 군사전력화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핵무기의 수량을 얼마나 증대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핵무기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핵무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등등이 북한 핵전략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현재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정영태 외 2014, 210).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리의 보다 효과적인 군사적 대응 즉 북한의 핵사용 또는 핵

사용 위협의 성공적 억제 및 무력화(無力化) 방책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전략 파악이 요구된다. 그런데 학계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과 사용위협에 대한 군사안보적 대응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고 북핵위협에 대한 유효한 대응책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북한의 핵전략은 우리의 대북정책 또는 북핵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파악·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 북핵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대부분 북핵을 어떻게 정치·외교적으로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비핵화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북핵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북핵에 대한 연구를 종래와 같이 비핵화연구에서만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핵전략의 파악을 통해 북핵에 대한 군사안보적 억제 및 무력화와 관련된 비중 있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핵화연구도 종래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명분론적 연구가 아니라, 북한이 상당기간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비핵화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전봉근 2016c, 24).

본 논문은 북한 핵전략의 유형적 특징과 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핵전략의 개념과 유형, 북한의 핵능력과 선언적 핵전략, 북한 핵전략의 운용상의 특징과 전망을 살펴본 후 결론에서 우리의 대응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특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발간된 전봉근 교수의 「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안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전봉근 2016a)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참조하고자 한다.

## II. 핵무장국의 핵전략의 개념과 유형

### 1. 핵전략의 개념 및 발전

군사전략은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방책이다(국방부, 2002, 10). 핵전략은 전략체계상 국가안보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략 내의 고유한 영역, 혹은 재래식 군사전략과 대등한 전략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핵무기의 가공할만한 파괴력은 재래식 전력에 기초한 군사전략과 상이하기 때문에, 핵전략은 핵전쟁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전략(核戰略, nuclear strategy)’은 핵무기의 구성·배치·운용을 둘러싼 군사전략(『Daum 백과』 ‘핵전략’ 참조)으로서 한 국가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위해 핵무기를 군사전력화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핵전략은 통상적으로 핵전력(nuclear force)과 배치형태를 포함하는 ‘핵태세(nuclear posture)’와 핵무기의 용도와 사용조건 등을 포함하는 ‘핵교리(nuclear doctrine)’로 구성된다. 핵태세가 핵전략의 하드웨어적 요소를 지칭한다면, 핵교리는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지칭한다(전봉근 2016a, 14).

핵전략은 핵태세와 핵운용전략으로 구성되지만,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핵태세(전력)가 변하면 운용전략도 바뀌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며 핵전략도 변화하게 된다. 핵태세는 핵전략의 하드웨어적 요소로 핵능력, 전력강화 등이 포함되며, 핵운용전략(Nuclear Doctrine)은 핵전략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로 교리와 기준 등이 된다(정영태 외 2014, 123).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억제(deterrence)’에서 출발하는 한 국가의 핵전략은 ①선언전략, ②표적 선정, ③능력 등 3가지 기본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으며, ①핵전력의 건설, ②배치, ③운용을 종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정영태 외 2014, 84).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되었던 핵무기는 재래식무기에 비해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전략사상을 일변시켰다. 종래의 전략개념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핵전략은 핵전쟁 방지와 세계평화유지가 그 목적이다(국방기술품질원 2011; 이태규 2012, “핵전략” 참조). 따라서 핵공격을 받을 경우 적에 대하여 괴멸적인 타격을 주는 보복공격 태세를 취해 핵전쟁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억제구상’이다.

억제구상은 1949년 8월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여 미국의 핵독점이 끝나면서 미국-소련 간의 핵무기 경쟁이 예상되기 시작하던 1950

년대에 생겼다. 이것은 1953년 7월 영국의 참모총장 슬레서(Sir John Cotesworth Slessor) 공군 원수에 의해 채용되었고, 이어 미국의 국무장관 덜레스(John Foster Dulles)가 '대량보복'이라는 형태로 도입했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핵전략이론이 나타났지만 모두 억제론을 중심으로 구축된 것이다. 억제이론은 미소의 냉전기에 발달한 군사전략이며, 현재까지 전쟁예방을 위한 이론과 경험적 토대를 제공하면서 현대국가전략에 적용되고 있다(김강녕 2017, 133).

핵전략은 핵무기가 갖는 초파괴력과 방사능의 위력을 배경으로 해서 전쟁의 발생을 억제하고 억제(deterrence, 또는 억지)에 실패해서 핵공격을 받을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며, 이러한 핵전략의 기본이 되는 것이 '핵억제(核抑制, nuclear deterrence)전략'이다. 그런데 억제가 성공적으로 유지되려면 ①적에게 아군(我軍)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 ②적이 공격으로 얻은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다고 인지하는 비용, ③아군이 충분히 보복행위를 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의도 등 3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김필재 2016a).

핵무기는 억제에 강점이 주어지는 무기이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무기'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핵의 엄청난 파괴력을 의식하여 자국(自國)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으로부터 핵에 의한 선제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는 무기가 되면 억제의 효과는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필요로 하는 한정적 핵전쟁 전략이 나오게 된 것이다. 도시·공업지대를 공격하여 대량살육이나 대량파괴를 행하는 핵무기 이외에도 국지전에 사용되는 핵포탄, 핵지뢰, 핵폭뢰(核爆雷), 단거리 핵미사일 등의 전술핵무기가 개발된 것은 바로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1970년 후반 미·소간의 핵전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재래식무기에 의한 침략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그 침략에 대항하여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재래식무기의 증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래식무기에 의한 억제(conventional deterrence)'의 개념도 나오게 되었다(『Daum 백과』 "핵전략" 참조).

핵미사일시대가 되자 상대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핵보복(제2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의가 일었다. 보복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량보복론’(1950년대)에서 ‘유연반응전략’(1960년대), 그 후의 ‘단계적 저지전략’, ‘상쇄전략’ 등의 논의와 다른 한편에서의 공격 대상을 구별한 ‘대도시전략’과 ‘대병력 전략’이 논의되었다.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즉 상호보복에 의한 파괴가 확실한 경우 억제는 안정된다(이것을 ‘전략적 안정성’이라고 한다)고 논의에서 핵전쟁 억제를 위해 ‘어떠한 핵무기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어디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라는 논의로 바뀌게 된 것인데 이러한 ‘핵전략’을 지지한 사람들은 특히 핵을 실전무기로 보는 그룹이었다(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10, “핵전략” 참조).

내랭(Vipin Narang) MIT 교수는 핵무기 보유가 핵억제력을 제공해준다는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핵보유 국가들의 핵태세에 따라 억제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보다 공세적인 핵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핵무기 사용의 문지방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핵무기의 1차사용(선제공격)의 핵 준비태세가 유익한 억제력을 제공해준다(Narang 2014)고 보고 있다.

## 2. 핵무장국 핵전략의 유형

### 1) 중소(中小)지역핵무장국의 핵전략태세의 유형

개별 중소지역핵무장국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연구가 있었지만, 이러한 연구는 이들이 공언한 핵전략과 핵교리에 대한 사례연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MIT대 내랭(Vipin Narang) 교수가 분류·분석한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 핵무장국의 핵전략연구는 중소지역핵무장국의 핵전략이 비교분석적 관점에서 체계적 연구·이론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다(전봉근 2016a, 27).

내랭 교수는 중소지역핵무장국의 핵전략태세를 ①축매형, ②확증보복형, ③비대칭확전형의 3개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핵태세 유형을 차별

화하는 변수로 후원 강대국의 존재, 재래식 무장력이 우세한 상대국가의 존재, 적극형과 위임형의 민군관계 여부, 자원의 제약여부 등 4개의 잣대를 제시했다. 여기서 내랭 교수의 핵전략 태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중소지역핵무장국의 핵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전봉근 2016c, pp.8-9).

첫째는 ‘촉매형(catalytic)’전략이다. 이것은 믿을 수 있는 후원 강대국이 있는 경우, 중소지역핵무장국이 취하는 핵전략태세이다. 이웃국가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지역핵무장국이 핵사용을 위협하지만, 실제 사용하기 보다는 전쟁의 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후원국의 개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전략이다. 이것은 믿을만한 후원강대국이 없지만, 가상 적국의 재래식 무장력이 우세하지 않을 경우 조금 여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치지도부가 핵무장력을 군부의 손으로부터 철저히 통제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핵전략태세이다. 이는 다소 여유로운 안보환경에서 핵무장력을 1차 공격용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에 대한 ‘보복용’으로 사용한다는 신중한 핵전략이다.

〈표 1〉 내랭 교수의 중소지역핵무장국의 핵태세 유형과 특징

구분	촉매형	확증보복형	비대칭확전형
목적	-삼자 개입/억제	-핵사용 억제, 강요	-재래식갈등과 핵사용 억제
능력	-소수 핵무기 조립능력	-생존 가능한 2차 타격력	-1차사용능력(전술핵 포함)
관리	-심층보관, 불투명	-공세적 민간통제(핵력의 분리, 경계해제)	-위임(핵자산과 통제권한을 군사력 및 군사교리와 통합)
투명성수준	-능력과 배치의 모호성	-능력의 확실성, 배치의 모호성	-능력과 배치의 확실성
사례	-이스라엘 초기 -남아공 -파키스탄 초기	-중국 -인도 -이스라엘 후기	-프랑스 -파키스탄 후기

출처: Narang 2014; Narang 2013, 488; 전봉근 2016a, 28 참조.



셋째는 ‘비대칭확전(asymmetric escalation)’ 전략이다. 이것은 믿을만한 후원강대국이 없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장력이 우세한 상대와 직면한 경우, 중소지역핵무장국이 선택하는 핵전략태세이다. 적대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소규모의 재래식공격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핵공격을 가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공격적인 입장을 통해 상대방의 어떤 군사적 도발도 미연에 방지한다는 전략이다. 상기 3개 유형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2) 핵무장국 핵전략의 주요유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기술의 진보에 의한 핵전력(nuclear force)의 질적 향상과 서로 핵우위를 겨냥하는 양적 정비에 수반하여 미국·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핵전략은 수차례에 걸친 변화를 보이면서 진전되어 왔다 (『Naver 지식백과: 두산백과』 “핵전략의 진전” 참조). 핵전략의 주요유형도 이러한 과정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은 미국에서 주로 구사한 대량보복전략, 단계적 저지전략, 유연반응전략, 상호확증파괴전략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전봉근 교수는 핵무장국의 핵전략 및 핵교리의 유형을 핵전쟁전략, 비대칭확전전략, 대량확증파괴전략, 최소억제전략, 촉매형전략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표 2> 참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전봉근 2016c, 9-11).

첫째는 가장 전쟁가능성이 높아 위협하고 공격적인 것이 ‘핵전쟁’ 전략이다. 이는 여타 핵전략이 핵전력의 세력균형을 통해 전쟁방지와 현상유지에 목적이 있는 데 비해 핵전쟁에서 승리하고 상대국을 점령·복속·분할하는 전통적인 전쟁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핵무기의 특수성과 현대 민족주의 성향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핵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점령 및 복속하는 것은 실현성이 매우 낮다. 그렇지만 주변국과 서로 양립하여 생존할 수 없는 제로섬적인(zero-sum) 안보상황에 있다면, 핵전쟁에서 승리하여 안보위해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모험적 동기가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자국이 핵무장했는데 적국이 비핵국이라면 핵전쟁을 감행하여 복속·점령하려는 동기가 더욱 커지게 된다. 북한, 이스라엘, 이란

등과 같이 주변국과 양립불가관계에 있고 안보위험이 국가생존을 좌우할 경우, 핵무장한 국가는 핵전쟁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대칭확전’핵전략이다. 이것은 한 핵무장국이 군사력, 특히 재래식 군사력이 우세한 적국을 상대할 경우, 전쟁억제를 위해 핵선제공격 또는 핵1차사용을 가능케 하는 전략이다. 비대칭확전핵전략은 비핵전력이 우세한 상대의 공격을 억제시키기 위해, 상대국의 어떤 비핵공격에 대해서도 초기에 핵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할 것이다. 냉전기 유럽의 대치국면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재래식 군사력이 우세한 소련과 동구국가의 재래식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1차사용을 위협했다. 파키스탄도 재래식전력이 우세한 인도에 대해 어떤 재래식공격에 대해서도 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도 재래식전력이 우세한 한미동맹에 대해 ‘핵선제공격권’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도 이러한 비대칭확전핵전략에 해당된다. 비대칭확전핵전략은 기본적으로 상대의 공격과 전쟁을 억제하고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는 점에서는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핵전쟁전략’보다 덜 공세적이다. 하지만 핵의 사용에 있어, 핵선제공격과 핵1차타격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여타 핵전략보다 매우 공세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셋째는 대량확증파괴(MAD)핵전략이다. 이것은 핵초강대국의 전통적인 핵전략으로서 냉전기 동안 과도한 핵무기의 축적으로 전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핵전쟁의 위험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용’ 핵전략을 핵전쟁 억제와 보복용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상대의 1차 핵공격에 생존할 수 있는 2차 핵타격력을 구비함으로써 상대의 1차 핵공격 동기를 제거하는 인간의 합리성에 기반한 핵전략이다. 1945년 핵무기 사용이후 70년 동안 강대국간 핵전쟁이 없었던 것은 이러한 대량확증파괴 핵전략과 인간의 이성이 작동하였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런데 중소규모 핵국가의 경우, 상대의 1차핵공격을 견디어 낼 생존공간이 없고, 또한 생존 가능한 2차 핵타격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역력이 부족하므로, 대량확증파괴 핵전략을 채택하기 어렵다. 이들 중소핵국가들은 대부분 비대칭 확전, 최소억제 또는 확증보복핵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핵전략은 전쟁억제와 확증보복을

위한 최소한의 핵전력을 유지하는 핵전략이다. 중국의 핵전략을 대변하는 최소억제전략은 전성수단으로서 핵무기의 효용성과 과도한 핵무장의 필요성을 의문시하고, 상대의 도시와 같은 가치목표를 파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핵전력을 유지한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핵선제불사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적의 1차 핵공격을 견디어내는 2차 핵타격력을 유지해야 한다. 최소억제핵전략<sup>1)</sup>은 핵무기의 용도를 상대의 공격과 압박을 거부하는 데 한정한다는 점에서 다소 수세적인 핵전략이지만, 중국과 인도의 이러한 소극적인 핵전략은 자신의 광범위한 국가안보적 목표와 부합한다. 이들은 냉전기의 진영간 제로섬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있어, 과도한 핵무장을 해야 할 안보적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제3세계를 대변하여, 핵초강대국에 대해 핵군축을 요구하는 도덕적 우위를 가질 수 있었고, 소모적인 핵개발비용을 경제발전에 투입할 수 있었다.

다섯째는 ‘축매형’ 핵전략이다. 이것은 핵능력을 추구하되, 실제 핵전력을 갖추기보다는 후원국의 개입을 촉진하여 자신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핵무기의 주된 용도가 적국을 향해 군사안보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국을 향해 외교안보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다. 이 경우에는 규모 있는 핵무장 없이 낮은 수준의 핵개발 또는 핵태세(nuclear posture)로도 축매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남아공의 핵무장, 그리고 초기 이스라엘의 핵무장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핵전력을 투사하기보다는 후원국인 미국의 개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Narang 2014). 냉전기의 영국의 핵전략도 미국에게 안전보장 개입을 촉진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 영국은 미국의 유럽보호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헤징(hedging)으로 필요한 최소한 핵군사력을 유지해왔는데 영국핵력의 주목적은 자신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미국의 우월한 핵력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Socker 2008, 64).

1) 최소억제전략(strategy of minimum deterrence의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대규모 핵보유국도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영국과 프랑스의 몇 척되지 않는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을 사전에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수개 도시가 초토화되는 위험을 각오하지 않고는 영국과 프랑스에 핵공격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박휘탁 2016).

한국은 1970년대 중반에 실제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핵개발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안전보장과 핵우산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2010년대 중반에 들어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면서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강하게 부각되었는데, 이것도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전략 투입과 안보공약을 촉발하는 효과를 낳게 하고 있다(전봉근 2016c, 11).

〈표 2〉 전봉근 교수의 핵무장국 핵전략의 주요유형과 특징

핵전략 유형	핵태세·교리 특징	환경	사례
핵전쟁	-핵을 군사용으로 이용 -핵전쟁 승리 목적 -핵전력의 우위유지	-제로섬적 안보 환경	-북한(?), 이스라엘(?), 이란(?)
비대칭 확전	-핵선제공격 가능 -핵선제공격, 핵1차사용으로 억제력 극대화	-상대의 핵·비핵력 우세 -전쟁 억제·거부가 목적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북한(미국, 한국) -미국(테러국, 핵확산국)
대량확증 파괴(MAD)	-2차 핵타격 중시 -핵전쟁 억제 목표 -세력균형 유지 -핵전력의 고도화·다원화	-고도 안보 위협 -제로섬개입을 비영합·현상유지 개입으로 전환	-미국, 소련/러시아
최소억제/확증보복	-핵 1차 불사용 원칙 -2차 핵타격력 유지 -상대 도시 공격용 -중간 핵전력 유지	-중간 안보 위험도 -군사용으로서 핵력의 한계	-중국, 인도
축매형	-비군사적 용도 중심 -후원국의 핵억제력에 안보 의존 -상징적 핵전력 유지	-적국의 우세한 핵·비핵 위협	-남아공 -영국 -핵개발 초기 이스라엘, 파키스탄

출처: 전봉근 2016a, 12.

### III. 북한의 핵능력과 핵전략

#### 1. 북한의 핵능력 평가

북한 핵문제는 남북한 분단이래 한반도 안보현안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작용해왔으며(박봉규 2017, 98), 20년 넘게 ‘비확산(non-proliferation)’이라는 시각에서 다루어져왔다. 북한 핵폐기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미국을 비

롯한 주변국가들은 양자간, 다자간 외교적 노력에 중점을 두고 단계적 해법을 중심으로 ‘중단 → 불능화 → 폐기’의 수순을 밟아나가고자 했다. 외교적·정치적 해법은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데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능력을 기정사실(de facto)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확산’ 차원이 아니라 북한 핵위협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반확산(counter proliferation)’차원에서 북핵문제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정영태 외 2014, 69).

핵전략의 3요소 중 하나인 핵능력은 특정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핵전력의 규모(quantity)와 질(quality), 운반수단, 그리고 핵전력이 적의 요격과 선제공격에 취약한 정도를 나타낸다. 이 3요소는 상호 연계되어 있다. 핵능력에 따라 1차, 혹은 2차 공격능력으로 나눌 수 있고, 1차, 혹은 2차 공격능력 중 어느 능력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에 따라 핵전력의 규모와 질, 운반수단이 영향을 받으며, 또한 핵능력의 수준에 따라 표적도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은 1, 2차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상대방 국민을 목표로 하는 선제공격전략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핵억제 최소목표는 핵무기의 사용위협을 통해 상대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최대목표는 모든 침략행위와 적대행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여 년간 핵개발의 원인을 미국의 위협에서 찾으면서 핵문제와 체제안전보장을 연계시켜왔다(정영태 외 2014, 86).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핵무장이 실체화되었다는 매우 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북한이 제1차 핵실험(2006.10.9)을 실시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김정일-김정은 주도로 핵·미사일능력증강에 국력을 집중해온 점을 감안할 때 현재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평소 북한의 공격적 행태와 스스로 인식하는 위기의식을 감안할 때, 핵무기 작동에 대한 완벽한 검증 없이도 실전배치부터 추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전봉근 2016a, 26).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6년도에만 2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무수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감행하였고, 사이버공격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한민구 2016, 2). 북한은 지

난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장거리로켓 발사, 핵탄두 모형공개, 수중 미사일 발사시험,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 발사시험 등을 통해 핵능력을 증강·과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헌법, 2013년 3월 “핵·경제 병진노선,”<sup>2)</sup> 그리고 2013년 4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등의 법령공포 및 노선선선포를 통해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했다. 우리정부도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플루토늄 40kg 보유(핵무기 5~8개 분량),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진행,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수준 도달, 장거리미사일 능력 보유, 2014년 핵무기 운용부대인 전략군 설치 등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거의 사실로 수용한 바 있다(대한민국 국방부 2014, 11-12). 또한 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1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핵물질<sup>3)</sup>의 생산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핵무기 보유량의 증가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핵무기 배치와 핵능력 증강은 우리의 안보와 군사적 대비태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에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결과 우리가 비록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과 미국의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 핵위협에 완벽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심각한 안보위기의식을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핵문제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벌써 사반세기가 지나도록 실패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7~8차례의 크고 작은 핵위기가 발생하는 동안, 그만큼 많은 핵합의가 채택되었다가 붕괴되었다.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렇다면 2016년 초 실시한 제4차 북핵실험(2016.1.6)과 잇따른 중장거리 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왜 우리에게 특별한 안보 비상사태인가? 이는 바로 북한의 ‘핵능력(核能力)’이

2) 2013년 3월 31일, 북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4월 1일)에 제출할 간부문제 및 조직문제에 대한 의안들을 상정하였고, ‘경제·핵 무력병진노선’을 채택했다(정영태 외 2014, 16).

3) 핵분열 물질과 핵융합 물질로 구분되며, 핵분열 물질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이 대표적이다. 핵융합 물질은 중수소, 삼중수소, 리튬6을 통상 의미한다(정영태 외 2014, 14).

‘핵전력(核戰力)’으로 바뀌면서, 북핵위협이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무런 제재도 꺼릴 것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연이어 같은 해인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2017년 7월 4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래의 잠재적인 북한의 핵위협이 현재의 실체적인 핵위협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이어서 2017년 9월 3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현재 북핵사태는 국가안위와 국민안녕을 총체적으로 위협하는 더욱 엄중한 국가안보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향후 북한의 핵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대남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며, 안보 위기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의 군사·외교·경제적 대응비용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남남갈등도 심화되어 대응을 위한 국력의 결집이 어려워지고, 안보를 위한 대외적 의존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의 핵무장이 고도화·고착화되면 우리로서는 그 어떤 비용으로도 감당하기 어렵고, 상시적인 북한의 전쟁위협과 전쟁위험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크게 우려해야 하는 비상사태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책이 시급하다.

그런데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전략, 특히 핵무기의 역할과 사용교리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과 위협성을 좌우하는 것은 그 핵무기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사용원칙이기 때문이다(전봉근 2016a, 27).

## 2. 북한의 표출된 선언적 핵전략

### 1) ‘핵보유국법’상의 핵억제·보복전략

김정은 정권이 공식 출범한 것은 2012년 4월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의에서라고 할 수 있다(정영태 외, 2014.12, 13).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처음으로 ‘핵보유국’을 명시하여, 핵무장을 기정사실

화했다.<sup>4)</sup> 그 후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이하 ‘핵보유국법’)’을 만들어 더욱 구체적이고 권위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또한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핵전략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 ‘핵보유국법’ 법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일격에 물리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당당한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했다(김영태 2017). 또한 이 법령은 북한 핵무기의 성격, 핵개발 동기, 지휘통제권의 소재, 핵전략 태세 등을 규정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알려진 유일한 법령이므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우선 북한이 천명한 핵무기의 용도를 살펴보자. 북한의 핵보유국법은 다음과 같이 핵무기의 용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전봉근 2016a, 29-30). 첫째, 동법 제1조는 핵무장 이유에 대해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라고 설명했다(김필재 2016a). 이러한 핵무장 명분은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선언, 2003년 1월 재차 NPT 탈퇴선언 및 즉각 탈퇴선언발효 등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압박정책, 적대시 정책을 그 탈퇴의 명분으로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이렇게 핵무기의 방어용, 자구용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핵무장의 정당성을 강변하려고 한다.

둘째, 동법의 제2, 제4, 제5조는 각각 핵무기의 사용조건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억제·격퇴·보복’의 용도를 부각했으며, 핵선제공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핵무기의 용도를 명시한 제2조에 따르면, “핵무장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필재 2016a). 이 조항만을 본다면, 북한 핵무기의 용도는 상대

4) “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데 따라 호상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전봉근 2016a, 129).



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 억제용, 그리고 억제실패시 반격용과 보복용에 한정하고 있다. 물론 상대의 도발이나 공격은 재래식과 핵공격을 모두 포함한다. 즉, 상대의 핵공격은 물론이고, 비핵공격에 대해서도 핵격퇴와 핵보복을 한다는 입장이다.

제4조는 ‘핵국가’에 대한 핵전략을 제2조와 같은 맥락에서 재설명하고 있다. 제4조에 따르면,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문은 북한의 핵무기가 사용되는 상황을 핵국가에 의한 침략 또는 공격의 경우에 격퇴 또는 보복을 위해,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한한다고 제한했다. 이 문안만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적국이 핵국가가 아닌 경우, 적국의 침략 또는 공격이 아닌 경우, 격퇴 또는 보복의 용도가 아닌 경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이 아닌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이 조항만을 놓고 볼 때, 핵무기의 용도를 선제공격이 아니라 억제와 보복에 제한하고, 핵통제권의 군부위임이 아니라 김정인에 의한 민간통제를 명시하는 등 선진형의 신중한 핵전략을 그대로 반영한 듯이 보인다.

하지만 제5조는 ‘비핵국가’에 대한 핵전략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 따르면, 북한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김필재 2016a).”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비핵국이 핵국가와 연대하여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할 경우에 한해 핵무기를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을 한다는 입장이다. 비핵국가도 핵국가와 연대할 경우, 북한의 핵공격 대상이 된다. 이 정책은 일견 신중해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북한은 핵국가와 연대한 핵국가에 대해서 핵1차공격뿐만 아니라 핵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다(전봉근 2016a, 30).

핵선제불사용원칙(negative security assurances; the principle of no first use of nuclear weapon)은 1978년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선언에서 나온 것으로, 비핵국가에 대해 핵보유국가와 연합하여 미국 및 동맹국가들을 공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원칙

이다. 이 선언은 침략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핵무기 불사용을 천명한 대신, 침략국의 공격이 있을 때는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배제하지 않았다(PMG지식엔젠연구소, 2012 “핵선제불사용원칙” 참조).

그렇다면 북한의 핵억제 및 핵보복전략과 중국이 표방하는 핵선제불사용 원칙과는 어떻게 다른가? 중국은 1964년 10월 핵실험에 성공한 이래 “최소 억제”(minimum deterrence) 개념에 근거한 핵정책을 고수해왔다. 중국은 핵무기 보유국가 중 첫 번째로 1964년에 “선제불사용”정책을 채택하여 핵무기를 오직 중국에 가해지는 핵공격에 대항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것이라 천명했다(신성호 2017, 8). 중국이 주장하는 핵선제불사용원칙은 상대방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만 핵을 보복용으로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재래식으로 공격할 경우, 핵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핵전략 중에는 가장 절제되고 신중한 입장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상대방의 공격이 있다면, 핵과 재래식 여부를 떠나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임으로 핵선제불사용원칙과는 다르다. 이 핵선제불사용원칙에 관해서는 “7차 당대회 결정에서 나타난 핵선제불사용원칙” 부분에서 다시 후술하기로 한다(전봉근 2016a, 30-31).

## 2) 핵선제공격론

북한은 자신의 ‘핵보유국법’에서 상대의 공격에 대한 핵억제와 핵보복을 핵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북한이 핵보유국법에서 핵선제공격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핵 선제공격을 주장한 기록이 있다. 북한은 제3차 핵실험(2013.2.12)이후 북한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면서 남북간 군사적 대치국면이 고조되자, 2013년 3월 27일 인민군최고사령부 명의 성명을 통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표하면서 “(대남)군사적 행동은 우리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핵선제타격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송정훈 2017).

따라서 핵보유국법에서 억제와 보복을 위한 사후적이고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김필재 2016a), 실제 각종성명을 통해 남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위협하고 있어, 핵선제불사용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칙적으로는 대외적으로 핵선제공격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전봉근 2016a, 31).

특히 북한은 2016년 상반기에 한국에 대한 핵선제공격 주장을 집중적으로 천명했다. 당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발사 등 도발에 대응하여,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유엔안보리는 결의 제2270호를 통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재를 압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수차례 위협했다. 2017년 상반기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또한 그러했다(노용택 2017).

북한 국방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 성명에서 “적들이 강행하는 합동 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핵전쟁 도발로 간주된 이상 그에 따른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핵타격전으로 될 것이다.…중략… 정의의 핵선제공격전은 우리의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에서 지적한 순차대로 실행되게 되어 있다.”고 핵선제공격을 위협했다(조정훈 2016).

이 성명은 우리의 한미군사훈련을 “핵전쟁 도발”로 간주한다는 전제에서 자신의 핵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명분과 정당화 논리가 아니라,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핵침략 책동으로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선제공격을 가하겠다고 공언한 점이다. 이는 북한이 자신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인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전에 그 명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동 국방위원회 성명은 핵태세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주장을 했다. 동 성명은 “존엄 높은 최고수뇌부가 비준한 남조선해방과 미국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우리식의 군사작전계획”이 있고, “남조선 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둔 공격수단들이 실전배비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기지와 미국본토를 과녁으로 삼은 강력한 핵타격수단들이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신창호 2016). 이 표현에 따르면, 핵무기들

이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매우 높은 수준의 발사준비단계에 있어 언제라도 정치군사적 결정에 따라 최단시간 내 발사할 태세에 있다고 강조함을 알 수 있다(전봉근 2016a, 32).

같은 날인 2016년 3월 7일 북한 외교부도 ‘핵선제타격권’이란 제목의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고 하는 이상 우리 혁명무력은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선제타격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핵선제타격을 주장했다. 동성명은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정전협정이 백지화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은 자위적인 조치가 된다고 강변했다. 북한의 정부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도 2016년 4월 11일 “무자비한 핵선제공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핵선제공격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이러한 언동은 전쟁개전과 핵선제공격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주장하면서 그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과 압살정책, 정전체제 붕괴로 인한 사실상 전쟁상태,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핵전쟁 도발 등이 그러한 핵선제공격의 명분에 해당된다. 또한 2016년 6월 북한이 수차례 제안한 남북군사회담을 남한이 거부하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초강경적인 공세”와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이라고 위협했는데, 이러한 성명도 핵공세의 명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안윤석 2016).

북한은 핵보유국법에서 선언적으로는 핵선제공격을 부정하면서, 핵억제 및 핵보복전략을 천명했다. 그런데 이러한 선언적 핵전략은 북한이 스스로 주장하는 ‘핵보유국’으로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단순히 명분용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전봉근 2016c, 18).

### 3) 제7차 당대회에 나타난 ‘핵선제불사용원칙

북한은 2016년 5월 열린 노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고 억제와 보복중심의 핵전략을 재천명했다. 이 행사는 외부관찰자에게 북한의 핵전략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당대회는 김정은 체제의 안착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행사로서

여기서 논의되고 결정된 핵전략이 향후 북한 핵전략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제7차 당대회 결정서에서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또한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핵무장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방침도 재천명했다.<sup>5)</sup>

여기서 나타난 북한 핵전략의 핵심은 핵선제불사용과 핵선제공격금지의 원칙이다. 다시 말해, 상대가 핵을 사용하지 않은 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중국식의 ‘핵선제불사용’ 원칙을 그대로 원용했다. 이는 핵보유국법에 나타난 핵무기사용원칙보다 더욱 제한적인 핵전략을 제시한 것이다(전봉근 2016a, 34). 이것은 유형적으로 볼 때 ‘내랭교수나 전봉근 교수가 제시한 확증보복형’ 핵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핵선제불사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생존가능한 2차 핵타격능력을 아직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추정되므로(김태현 2016, 17) 이 핵교리는 자신의 공격성을 가지기 위한 핵 전력이라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핵보유국법 제2조와 제5조를 보면, 핵무기 사용원칙에 대해 “우리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 데 복무하고(제2조)”,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제5조).”고 규정했다(김필재 2016a).

5) 이 결정서의 내용은 김정은 제비서의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2016.5.7.)의 관련 내용을 재확인한 것인데,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말줄 자자참가)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방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김재중 2016)”

그렇다면 “(적대국이)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정성장 2017)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핵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 조건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설사 적대국의 공격이 있더라도 재래식무기만 사용한 비핵공격이라면 북한이 핵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이 입장은 중국의 핵선제불사용원칙과 거의 동일하다. 이 입장은 위에서 살펴본 가장 공세적인 핵선제공격원칙과는 큰 차이가 있다. 심지어 핵보유국법에서 언급한 (상대의 핵 또는 비핵공격에 대한) 핵보복 원칙과도 차이가 있다.

요컨대 북한이 제7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최종 핵전략과 핵사용원칙은 중국의 핵선제불사용을 표방한 매우 신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가장 신중하고 관행적인 핵전략인 ‘핵선제불사용’원칙을 채용한 배경에는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반감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러한 북한의 핵전략이 한국과 미국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은 핵국가이고 한국은 핵국가와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모든 대북 군사안보적 조치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핵으로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함으로써, 핵공격의 명분을 이미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전봉근 2016a, 34-35).

## IV. 북한 핵전략의 운용상의 특징과 전망

### 1. 북한 핵전략의 저의 및 운용상의 특징

북한은 2012년 개정헌법,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핵보유국법),’ 2016년 제7차 당대회 결정서 등에서 북한의 핵전략, 특히 핵무기의 역할과 사용교리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핵보유국법과 제7차 당대회 결정서 간에도 격차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명분과 현실간의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한 면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의 핵전략의 저의 및 향후 예상되는 운용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 핵국가 관행모방을 통한 비난회피이다. 북한은 ‘핵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다른 정상적인 핵국가의 관행적인 핵전략을 최대한 모방하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핵국가는 NPT회원국이며 비핵국가(비확산의무를 준수하는 국가)를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정책 즉 선제핵불사용원칙을 제7차 당대회 결정서에서 표방한 바 있다.<sup>6)</sup> 북한이 이렇게 신중한 핵정책을 선언한 배경에는 최소한 명분상 다른 보통 핵국가의 관행적 핵전략을 채택하고, 신중한 핵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거나 국제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NPT회원국이면서 핵비확산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국제사회와 유엔안보리의 규탄을 받던 중 NPT탈퇴조항을 남용하여 탈퇴한 후 핵무장을 한 유일하고 특별한 사례이다. 북한은 다른 NPT상에 공인된 ‘핵클럽 국가(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또는 원래 NPT비회원국으로서 핵무장한 ‘사실상의 핵국가(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과 같은)’와는 국제법적 지위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의 핵무장은 핵비확산국제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일체의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관심과 비난과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비확산국제규범 위반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한 이유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유엔안보리제재를 받고 있다. NPT를 비롯한 현행 핵비확산국제제체 하에서는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해서 국제법상 ‘핵국가’의 지위를 부여받거나, 국제제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6) 미국의 2010년 ‘핵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는 “미국은 NPT에 가입해서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다”이라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원칙을 천명했다. 이러한 NSA는 핵국가의 일반적인 핵무기 사용원칙으로서 관행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동맹국 보호의 의무로 인해, 소위 ‘조건부 NSA’ 정책을 견지했다. 조건부 NSA에 따르면, “미국은 NPT의 비핵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국가가 다른 핵국가와 동맹을 맺거나, 연대하여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 안보공약국을 공격할 경우 예외로 한다(전성훈 2010).”

다.. 그런데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요구하며,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핵전략을 모방·선언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입장이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전봉근 2016c, 20).

둘째는 선언적 핵전략을 통한 자신의 핵전략의 호도(糊塗)이다. 북한은 선언적 핵전략을 통해 비핵국가(non-nuclear weapons states)에 대한 핵사용금지와 핵선제불사용(NFU: No First Use) 등을 주장·부각함으로써 자신의 핵전략을 호도(糊塗)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일국의 핵전략은 그 나라의 적대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등 NPT에서 공인된 모든 핵무장국들의 선언적 핵전략에서 핵심적인 것은 주적국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원칙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전략은 북한이 적국으로 보는 한국, 미국, 일본 등에 대한 핵무기 사용원칙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때 이 국가들은 모두 핵국가이거나, 핵국가인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어, 과연 상기의 선언적 핵전략(“상대가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이 적용될 것인지 의문이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핵선제타격의 권리’가 있다고 반복하여 주장해왔기 때문이다(정용수 2016). 향후 남북관계 또는 미북관계가 악화된다면 북한이 이 주장을 반복하면서, 핵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핵전략을 평가할 때는 명분상 천명한 핵선제불사용원칙이 아니라, 북한 핵전략의 실체를 보여주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선제타격권을 강조한 핵전략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전봉근 2016, 20).

셋째, 핵전력과 핵태세간 격차로 인한 핵전략의 미정착이다. 핵전략을 군사안보전략의 일부나 하위개념으로 볼 경우, 핵태세의 발전목표는 핵개발을 통해서 군사안보전략을 구현하는 것이다(정영태 외 2014, 22). 현재 북한의 핵개발수준은 중급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벌써 5차 핵실험을 통해 일정수준의 위력을 발휘했고, 점점 위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sup>7)</sup> 소형경량화

7) 미국은 1945년 7월 16일 첫 번째 핵실험에서 최근 가장 마지막으로 한 1992년 9월 23일 실험에 이르기까지 총 1,030번의 핵실험을 실시했다(정영태 외 2014, 88).



의 수준도 이미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준까지 도달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되고 있다(정영태 외 2014, 44).

하지만 북한의 경우, 공언한 핵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전력과 핵태세 간에는 큰 격차가 있어, 북한의 핵전략이 아직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북한이 주장하듯이 선제핵불사용을 부정하고 핵보복전략을 채택할 경우, 북한이 상대의 1차 핵공격을 흡수한 후 2차 핵공격을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핵무기 숫자와 핵무기 보호체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북한 핵개발상황을 볼 때, 미국 등 핵국가의 1차 공격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핵무기 규모와 배치, 그리고 핵무기 보호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은 핵전력과 핵태세간 격차로 인한 핵전략의 미정착문제의 극복·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향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 북한의 핵전략의 운용시나리오 및 환경변수

북한 핵무기 개발상황의 견지에서 볼 때 북한이 내세우는 핵전략과 실제 핵대응 태세간에는 불일치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 핵교리의 허구성과 핵태세의 불일치성이 존재한다(전봉근 2016b, 14). 이러한 핵전략과 핵태세의 불일치에 대한 예상되는 북한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2차 핵타격능력 구축시까지 자신의 약점보완을 위한 공격적 핵전략의 추진 가능성이다. 북한은 그들 자신이 공언하듯이 2차 핵타격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핵물질 추가생산 및 핵무기 증대, 핵탄두의 경량화·소형화, 탄도미사일 성능개선, 잠수함발사미발사기술 개발 등 핵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2차 핵타격능력을 갖추는 때까지는 북한이 외부의 선제공격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런 과도기 동안 북한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핵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핵선제공격, 상대국의 비핵공격에도 무조건 핵전쟁으로 확대하는 ‘비대칭 확전’ 등 공세적인 핵전략을 북한이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로 인한 북한 경제의 타격과 그로 인한 핵능력증강 지연상황의 발생 가능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핵능력 증강이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은 이스라엘(Israel)과 같이 핵전략에 대한 모호성(ambiguity, 糶糊性)을 증가시켜, 상대의 공격 가능성을 억제하는 동시에 시간별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NPT체제 밖의 핵 문지방을 넘은 국가로는 인도-파키스탄 이외에 이스라엘이 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핵무기 존재와 유지에 대해 결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NCND(Never Confirmed, Never Denied)정책을 취하면서 ‘중동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100~200기 정도의 핵탄두를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 네게프(Negev) 핵연구센터를 이용한다고 보고 있다(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2012, 49; 정영태 외 2014, 104).

셋째는 북한의 안보위기와 체제위기 양 의식의 고조로 인한 핵무장의 증강의 가속화 가능성이다(전봉근 2016b, 15). 북한의 핵개발 동기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비한 안보용, 국내정치·경제위기에 대응한 정치용 등 2가지 용도로 대별된다. 북한의 핵실험 목적은 대내외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대내적으로 김정은 집권이후 처음으로 닦친 내부위기로서 장성택 숙청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민심동요를 억제하고 잦은 인사교체에 따른 군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 핵실험만한 카드도 없다고 볼 수 있다(정영태 외 2014, 59). 향후 북한이 대내정치용에만 비중을 둔다면 체제위기를 가속화하는 과도한 핵개발을 지양하고 낮은 수준의 핵무장에서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북한이 스스로 자각하는 안보위기와 체제위기가 매우 높은 만큼 안보용으로 핵무장 증강에 집중할 것으로 평가된다(전봉근 2016c, 21). 북한은 가공할만한 위력의 핵무기 보유를 통해 열악한 대내외적 환경에 처한 북한체제의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박봉규 2017, 100).

넷째는 한반도 분단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탈냉전기 북한의 만성적인 국

가위기에 기인한 북한의 지속적인 공격적 핵전략의 추진 가능성이다. 북한이 처한 안보위기와 체제위기는 다른 어떤 핵무장국이 처한 상황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지구상 어떤 국가도 북한처럼 이웃 나라와 “먹고 먹히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을 벌이지는 않는다. 어떤 국가도 북한처럼 국가붕괴와 소멸위험을 초래할 만한 체제위기, 경제위기, 정권위기, 안보위기 등 총체적 국가위기에 시달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 단기적으로 체제와 정권의 생존을 목표로 이를 가능케 하는 공세적인 핵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북한의 핵지휘통제의 위험성과 핵안보사고의 가능성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전봉근 2016c, 16, 21).

그러면 북한의 핵전략에 변동을 초래하는 주요 환경변수는 무엇인가? 이러한 주요환경변수에는 북중관계와 미중관계 등이 있다. 북한의 핵개발 노력은 소련과 중국의 핵개발 노력과 성공에 의해 촉진된 것인바(박봉규 2017, 104), 지금까지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무장과 관련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면도 없지 않다. 중국과 소련(러시아)의 묵인 또는 공식적인 승인하에 이루어진 기술원조나 협력 등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향상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제3세계로의 확산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정영태 외, 2014, 56).

동아시아에서 미중안보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중국이 북한을 미중경쟁에서 주요전략자산으로 보고 자신의 영향권 내에 포섭하려고 시도할 경우,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관용하는 것과 경우가 유사하지만 북한이 현시적 핵개발(顯示的 核開發)을 하거나 선제핵공격 등 핵위험을 가하고 있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는 내랭(Vipin Narang) 교수가 분류한 핵무장한 북한이 핵강국이자 후원국인 중국<sup>8)</sup>의 개입

8) 북한은 지난 2010년 중국에서 목재운반차량 6대를 56억원에 수입해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차량으로 개조한 적이 있다(박수찬 2014).

을 유도하기 위한 ‘촉매형’ 핵전략을 취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북-중간 낮은 신뢰수준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을 상대하는 양국의 전략적 고려를 본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가능성은 낮지만, 내랭 교수가 주장하듯이, 만약 북한이 ‘촉매형’ 핵전략을 채택하게 된다면 북한의 과도한 핵능력 증강과 공격적인 핵전략은 완화되고 안보상황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Narang 2015).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핵보유 인정가능성은 어떠한가?

### 3. ‘북한 핵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인정’의 지속성

NPT는 국제핵비확산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1970년 3월에 발표되었다. NPT의 목적은 ①핵무기의 수평적 확산방지, ②핵군축 실현, ③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증진이다. 2013년 8월 기준으로 NPT 당사국은 190개국(북한 포함시)이며, 비당사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 등 4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75년 4월에 가입했다(제성호 2011, 296~298).

북한이, 스스로 주장하고 요구하듯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국제사회 및 NPT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정치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는 핵무장국이 모두 9개국인데, 이들 핵무장의 법적 지위는 서로 확연히 다르다. 핵무장한 9개국을 NPT와의 관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합법적인 ‘핵국가(nuclear-weapon state)’로 인정한 마·라·영·프·중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다. 이들은 NPT의 ‘핵국가’ 인정기준인 ‘1967년 이전의 핵무장’에 의해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동시에 이들은 NPT에 따라 핵무기를 제거해야 하는 핵군축의 의무도 같이 지고 있다(전봉근 2016a, 146).

둘째는 당초 NPT에 가입하지 않았고, NPT의 틀 밖에서 핵무장에 성공한 3개국, 즉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있다. 이들은 편의상 ‘사실상의 핵국가(de-facto nuclear state)’로 불리지만(정영태 외 2014, 15), 이들에게는 여하한 ‘핵국가’의 합법적 지위도 부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NPT의 비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불이익과 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Export Control Regime)<sup>9)</sup>는 NPT비회원국을 원자력물자와 전략물자의 국제통상에서 배제시킨다. 따라서 이들은 원자력과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어떤 물자와 기술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다. 만약,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한국이 핵무장을 위해 NPT를 탈퇴한다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각종 국제규범과 국내법에 따라 국제원자력시장에서 배제된다. 핵물질과 기술과 기자재를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된다(전봉근 2016a, 46).

셋째는 NPT 회원국이었다가 불법 핵개발활동이 탄로 나자 NPT를 탈퇴하여 핵무장한 국가 북한이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합법적 ‘핵국가’ 5개국뿐만 아니라, NPT를 밖에서 핵무장한 3개국 즉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도 법적 지위가 다른 것이다. 북한은 NPT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핵무장의 불법성과 위협성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NPT는 가장 많은 회원국(190개 회원국)을 가진 성공적인 국제조약으로 손꼽히는 국제조약이다.<sup>10)</sup> 국제법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핵무기국, nuclear state)’으로 새로이 인정받으려면 NPT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어떤 나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은 영원히 불가능한 작업이다. 그렇다면 국제법적이 아닌 국제정치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공식적인 5개 핵국가는 국제정치적으로 강대국이자 유엔 안보리이사국으로서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독점적 핵국가 지위에 도전하고, 핵을 확산하여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국가인 북한을 새로이 ‘핵무기국가(nuclear weapon state)’로 인정한다는 것은 상상조차하기 어렵다(전봉

9) 국제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는 세계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선진국들의 비공식적 협의체들로서, 각 체제별로 별도의 회원국과 운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외교부 2012, "국제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참조).

10) 우리나라는 1975년 4월 23일 86번째로 정식 NPT 비준국이 되었으며, 중국은 1992년 3월, 프랑스는 동년 8월 각각 가입했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12일에 탈퇴했다(매경닷컴 2017, "NPT" 참조).

근 2016a, 46-47).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할 경우에는 당장 우리나라에 위협이 됨은 물론 동북아 핵확산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전세계적인 안보 질서를 교란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박봉규 2017, 99).

심지어 당초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장국’이 된 ‘사실상의 핵국가’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핵보유국(핵무기국가)’의 법적 지위를 전적으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항시적으로 NPT(비핵보유국(비핵무기국, non-nuclear state))으로 가입하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전략 물자의 국제교역에서도 배제시키는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 북한도 핵무장시 이러한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

요컨대 ‘핵보유국(핵국가)’ 지위는 오로지 NPT만 부여할 수 있는데, NPT는 이미 닫힌 시스템이다. 따라서 북한이 새로운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정치적으로 ‘새로운 핵보유국’ 또는 ‘사실상의 핵국가’로 인정하는 것도 NPT와 잠재적 핵무장국에게 미칠 치명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도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만 최소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할 수준까지 핵개발을 진척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일 것으로 생각된다(정영태 외 2014, 24).

하지만 “무장강도” 또는 “총기로 무장한 인질범”와 같은 범죄자의 무장(武裝)이 결코 합법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법이다. 북한의 핵무장의 경우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NPT가 건재(健在)하는 한 NPT가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weapon state)’은 합법적 핵무장국 5개국 이외에 더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불법적 핵무장국가(illegal nuclear-armed state)로 변신한 북한의 핵무장의 성격과 지위는, 당연한 일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비판과 논란의 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V. 결론: 우리의 대응

북한은 개정헌법(2012.7),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2013.3),’ 그리고 핵보유국법(2013.4) 등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다. 북한은 핵무장을 법제화하고 국가노선으로 채택하고, 이에 맞추어 핵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김강녕 2017, 136-137). 제7차 당대회이후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2016.6.23.) 및 SLBM 발사(2016.7.9.)<sup>11)</sup> 등에서 보듯이 북한 핵무기 고도화(핵무기 소형화·성능강화 및 보유량 확대, 투발수단의 다양화 등) 프로그램을 그들의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한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정치·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6차례의 핵실험과 거듭되어온 투발수단의 시험발사로 북한의 핵문제는 현재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와 나아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전인류에게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김법현 외 2016, 145).

이제 북핵문제는 단순히 남북차원을 넘어섰다. 북핵문제가 이렇게 악화 된 것은 우선적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의 생존에 기인하겠지만 북핵문제에 대한 미숙한 대응에도 그 일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담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사이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박봉규 2017, 107-110). 북한의 핵무기 배치와 핵능력 증강은 우리의 안보와 군사적 대비태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근본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것도 한미동맹이 비록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미국의 핵우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위협에 완벽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심각한 안보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전봉근 2016a, 26-27).

한국에게 있어 적극적 억제제 요체는 동맹국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또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이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

11) 핵무기의 생존성과 관련하여 스나이더(Glenn Snyder)는 폭격기와 육상의 고정발사 미사일 육상의 이동식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생존성을 비교하고 이 중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생존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이재학 2011, 109).”

우 미국의 막강한 핵무기로 응징·보복하여 북한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위협을 통해 핵무기 사용을 억제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약화되고 미·중간 신냉전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핵우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면도 없지 않다.<sup>12)</sup> 이러한 정세 속에서 억제의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과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타격을 위한 킬 체인(kill-chain)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정영태 외 2014, 130-131).

방어에 있어서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중간경로단계 요격을 위해 미국의 사드(THAAD) 미사일이 일부 배치중이지만, 현 요격·방호체제로는 일부 실전배치에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미흡한 수준이다. SM-3 미사일 도입도 아직 진척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방어부문에 있어서도 보완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정영태 외 2014, 31).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때마다 대두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핵무장론이다. 일부의원들(당시 여당 원내대표를 포함하여)이 국회연설에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일부 주요언론과 지도층 인사들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 우리정부는 기존 핵비확산정책을 재확인하고, 핵무장론을 일축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전력이 증강되고 핵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 주장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향후 핵무장론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과 토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대략 3개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가장 강경하게는 자체 핵개발 주장이다. 임박한 북핵위협 하에서 누구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북핵 억제책은 자체 핵개발과 핵무장뿐이라는 입장이다(유영옥 2017).<sup>13)</sup> 둘째는 미군의 전술핵을 국내로

12)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은 프랑스를 위시한 타국가의 핵개발 시에도 제기되어왔다(이호재1981, 51-55).

13) 이정훈, “한국 핵무장론 ②: 아무도 핵보복 못한다.” <http://blog.donga.com/milhoon/archives/7354>; 검색할



재반입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핵에 대한 억제제는 핵으로만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는 것은 각종 장애요인으로 인해 불가능하니 차선책으로 국내에 배치된 미군의 전술핵에 의존하자는 입장이다. 셋째는 핵무장론 중 가장 온건하게는 농축재처리 역량을 보유하여 잠재적인 핵능력을 갖자는 주장이다. 이는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반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수용하면서도, 민수용 농축재처리 역량을 우선 확보하여 비상시 단기간 내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핵잠재력을 갖추자는 입장이다. 이는 1990년대부터 계속되는 ‘핵주권론’을 연상시킨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위협한 국가인 북한의 핵위협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국민으로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현 상황에서 볼 때 불법적이고 미군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절박한 상황은 아니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국익을 해치는 대안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극단적으로 북한의 핵위협 하에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가 작동하지 않고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한국은 핵무장의 모든 비용과 불이익을 무시한 채 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과 비핵정책의 도덕적 우위,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력, 국제사회의 북핵 반대연대 등으로 우리안보와 경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비핵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외교·안보·경제적 국익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민수용 농축재처리 능력을 확보<sup>14)</sup>하여 핵잠재력을 구축해온 일본과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독일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우리 국방당국이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제공격,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제시하고 그 도입과 전개를 서두르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한 현실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에 대비한 정치·군사적 대비태세의 강화가 요구된다. 당면한 북핵위협을 억제·극복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튼튼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공조하에 북한핵

---

2017/7.

14) 농축재처리 능력은 우리의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핵폐기물을 ①재활용 가능한 핵연료, ②무기급 플루토늄, ③축소된 영구적 폐기물 등으로 재분류·활용이 가능하므로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의 억제는 물론 비핵화·무력화를 위한 단·중·장기적인 군사적·외교적 대응책의 수립·이행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악의 순간에도 선택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다시 희망과 용기를 내어 ‘비핵화’를 통한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북핵무력화·억제화를 통한 북핵전력의 극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국가안보실. 2014.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 국방기술품질원. 2011.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 국방부. 2002. 『주요 국방정책 용어』.
- 김강녕. 2017. “당면한 북한의 핵위협과 우리의 대응.”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2017년 여름호. 통권 제90호
- 김법현·이승철. 2016.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제80호.
- 김영태. 2017. “북한,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법’ 제정,” 『노컷뉴스』 (4월 2일).
- 김재중. 2016. ”북한 김정은 ‘핵무력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핵.경제 병진노선’ 고수 천명.“ 『경향신문』 (5월 8일).
- 김필재. 2016a. “북한(北韓) 최초의 핵(核)전략: ‘4·1 핵보유 법령’ 해제.” 『조갑제 닷컴』 (10월 19일).
- 김필재. 2016b. “핵전략의 기본개념: 대량보복전략~일방확증 파괴.” 『조갑제 닷컴』 (11월 8일).
- 김태현. 2016. “북한의 핵전략; 적극적 실존억제,”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22권 제3호.
- 노용택. 2017. “북 매체, 한미 합동훈련에 '선제공격' 위협.” 『국민일보』 (3월 18일).
- 대한민국 국방부. 2014. 『2014 국방백서』.
- 대한민국 국방부. 2016. 『2016 국방백서』.
- 매경닷컴. 2017. 『매경시사용어사전』.
- 박봉규. 2017. “북한핵의 맥락적 이해.”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과 국제사회』. 제1권 창간호(봄호).
- 박수찬. 2014. “북(北) 무인기로 드러난 중국 기술 유입, 차단 가능할까.” 『세계일보』 (5월 8일).
- 박휘락. 2016. “북 SLBM 막자고 핵추진 잠수함? 단방약 찾기.” 『데일리안』 (9월 6일).
- 백용진. 2017.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외교부. 『보도자료』. 제17-537호(9월 12일).
- 송정훈. 2017. “북(北) ‘군사적 행동은 핵 선제 타격 포함,’” 『머니투데이』 (3월 27일).
- 신성호. 2017. 『미중 핵군사전략경쟁』 (EAI연구보고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신창호. 2016. “북, ‘키리졸브는 날강도 미제와 박근혜패당 최후발악,’”

- 『국민일보』 (3월 7일).
- 안윤석. 2016. “조평통, ‘대화 제의 거부하면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 (종합).” 『노컷뉴스』 (5월 2일).
- 외교부. 2012. 『외교통상용어사전』.
- 유영옥. 2017. “핵무장 서둘러야 할 때다.” New Maker(7월 17일).
- 이재학. 2011. “억제이론으로 본 중국의 핵억제전략.” 신아시아연구소. 『신아세아』, 제18권 2호.
- 이태규. 2012. 『군사용어사전』. 서울: 일원서각.
- 이호재. 1981. 『핵의 세계와 한국핵정책』. 서울: 법문사.
- 전봉근. 2016a. 『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안보』, 정책연구시리즈, 2016-07.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전봉근. 2016b. “북한 핵교리 특징평가와 시사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IFANS)』. 2016-26(7월).
- 전봉근. 2016c. “북한 핵전략의 유형과 특징 평가: 선언적 핵전략을 중심으로.” 2016한국국제정치학회 60주년기념학술대회 발표논문. 정선 강원랜드 컨벤션호텔(6월 23일-25일).
- 전성훈. 2010. “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분석과 평가.”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 정성장. 2017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평가: 북핵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신문』 (7월 25일).
- 정영태·홍우택·김태우·박휘락·이상만·이호령·조영기. 2014.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 통일연구원(12월).
- 정용수. 2016. “핵선제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중앙일보』 (8월 11일).
- 제성호. 2011.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조정훈. 2016. “北 ‘선제적 공격적 핵타격전 될 것.’” 『통일뉴스』 (3월 7일).
- 조한범. 2016. “북핵문제의 과도적 합의에 대한 우려,”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3월 8일).
- 최태범, 2017. “북한 6차 핵실험, ICBM용 ‘수소폭탄’ 성공주장…실제 성공했나.” 『아시아투데이』 (9월 8일).
- PMG지식엔젤연구소. 2012. 『시사상식사전』. 서울: 박문각.
- 한민구. 2016. “발간사.” 대한민국 국방부, 『2016 국방백서』.
- 홍국기. 2017. “북(北) ‘ICBM 시험발사’ 공언부터 성공 발표까지.” 『연합뉴스』 (7월 4일).
- Clark, Ian, 1982. Limited Nuclear War: Political Theory and War Conventions. Oxford: Martin Robertson.

-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2012. Global Fissile Material Report 2011: Nuclear Weapon and Fissile Material Stockpiles and Production.
- Narang, Vipin. 2013. "What Does It Take to Deter? Regional Power Nuclear Postur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57, No.3(June).
- Narang, Vipin. 2014.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ocker, Jeremy. 2008. "British Nuclear Strategy." Mark Fitzpatrick, Alexander Nikitin, Serge Oznobishchev. eds. *Nuclear Doctrines and Strategies: National Policies and International Security*. Amsterdam: IOS Press.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4. 2010 Nuclear Posture Review.
- 이정훈. "한국 핵무장론: ②미국은 핵 보복 못한다." <http://blog.donga.com/milhoon/archives/7354>(검색일: 2017.7.7).
- "핵전략." 『Daum 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검색일: 2017.7.9).
- "핵전략." 『신화위키』. <http://ko.mythology.wikia.com/wiki/>(검색일: 2018.7.7.6).
- "핵전략의 진전." 『Naver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검색일: 2017.7.9).
- "핵태세 검토 보고서."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7.7.8).
- 조선중앙통신, 2016/03/07.

투고일 : 2017년 7월 15일 · 심사일 : 2017년 8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9월 11일
--

\* 김강녕은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조화정치연구원 원장(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출강)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세계속의 한국: 외교·안보·통일』(경주: 신지서원, 2013) 외 다수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분단체제극복을 위한 남북한 정부의 과제,"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15권 제3호(2015.8) 외 다수가 있다.

<Abstract>

##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Its Type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Kim, Kang-nyeong  
(Institute of Global Harmony)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ype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the concept and type of nuclear strategy; the nuclear capabilities of North Korea and the declarative nuclear strategy;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and conclusion. Recently, the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 enhancement of nuclear capabilities in North Korea have raised serious problems in our security and military preparedness. Nuclear strategy means military strategy related to the organization, deployment and op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study of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begins with a very realistic assumption that the nuclear arsenal of North Korea has been substantiated. It is a measure based on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that our defense authorities present the concepts of preemptive attack, missile defense, and mass retaliation a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are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deploying them. The declared nuclear declaration strategy of the DPRK is summarized as: ①Nuclear deterrence and retaliation strategy under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ct, ②Nuclear preemptive aggression, ③The principle of 'no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in the 7th Congress. And the intentions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are as follows: ①Avoiding blame through imitation of existing nuclear state practices, ②Favoring of nuclear strategy through declarative nuclear strategy, ③ Non-settlement of nuclear strategy due to gap between nuclear capability and nuclear posture. North Korea has declared itself a nuclear-weapon state through the revised Constitution(2012.7), the Line of 'Construction of the Nuclear Armed Forces and the Economy'(2013.3), and the Nuclear Weapons Act(2013.4). However, the status of "nuclear nations" can only be granted by the NPT, which is already a closed system. Realistically, a robust ROK-US alliance and close US-ROK cooperation are crucial to curbing and overcom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e face. On this basis, it is essential not only to deter North Korea's nuclear attacks, but also to establish and implement our own short-term, middle-term and long-term political and military countermeasures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disarmament.

**Key words** :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Nuclear Capability, Nuclear Preemptive Attack, ROK-US Allianc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